

(주) 한국무역정보통신

463-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

- * 귀사의 KTNET 가입을 환영합니다.
- * 다음은 가입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.
- * 문의전화 : 1566-2119
- * FAX번호 : 02-6000-2137/8

1. 고객 사항

- 1) 1번 고객사항은 전부 기입
- 2) 고객사항 밑의 **고유부호** 기입(화물, 통관, 관세환급 서비스 선택시)
 - ① 선사/포워더 : 세관에서 부여한 영문4자리(ex: AAAA)
 - ② 운송사 :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6자리(ex: 100100)
 - ③ 보세구역 : 세관에서 부여한 보세구역설영특허번호 숫자 8자리(ex: 10010010)
 - ④ 검수회사 :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9자리(ex :100100100)
 - ⑤ 관세사 & 자가 통관업체 : 세관에서 부여한 숫자 5자리(ex : 10010)

2. 전자무역인프라/EDI서비스

- 1) 사용자 ID와 수발신인식별자는 KTNET에서 부여후 통보
단, **상역외환서비스 가입 고객**은 영문숫자 혼합 6자리에서 12자리 미만으로 **수발신인식별자 기입**(기입하지 않을시 임의 지정)
- 2) 비밀번호는 영문을 첫자리로 하여 영문과 숫자를 혼합(8자리)으로 작성

3. 통신망서비스

- 1) KTNET 전용선이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할 고객만 작성
 - ① 전용회선방식 : KTNET과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구축

4.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

- 서류 확인을 상호명 작성

- * 신청일과 신청자란 기입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송부 (2,3,4,5페이지)
 - 신청자란 기입시 반드시 명판과 직인을 함께 날인

KTNET 전자무역인프라 서비스 이용 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이용약관은 (주)한국무역정보통신(이하 '회사'라 한다)이 제공하는 KTNET·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서비스는 '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', '관세법', '전기통신사업법'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이용약관의 보고, 신고 및 변경)

① 이 이용약관의 내용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관세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.

② 이용약관 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기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 경우,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한 후 이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며, 이 때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혹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

1. 전자무역기반시설 등: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.

2. 신청자: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
3. 이용자: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및 이용하는 자에게 동 업무의 수행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.

4. 이용자설비: 이용자가 설치한 컴퓨터,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비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.

5. 사서함: 전자무역기반시설 내에 이용자ID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저장소를 말한다.

6. 이용자ID: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사서함에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
제5조(기본서비스)

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자문서 거래

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 물품 교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케

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② 회사가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 후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약정사항의 변경)

이용자가 제9조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이용신청의 제한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.

1.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하였을 때
2.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
3.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
4.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
5. 설치장소, 설치장비 등이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
6. 기타 신청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7. 기타 이용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

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
제13조(서비스제공 개시)

서비스제공 개시일은 제28조제5항의 가입승인서 발급일로 정한다.

제14조(시험서비스)

①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서비스 기간을 설정하여 TEST ID를 통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회사는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5조(사서함 관리)

①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 사서함에 보관된 문서를 중계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이용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별도 보관·관리한다

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 전자문서의 종류, 송수신시간 등 전자문서의 이용 상태에 관하여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는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당/상역/외환/통관/물류/결제/전자민원 등의 행위 시 필요한 무역문서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. 전자문서 보관 등

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무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, 업무 절차상 제 3자 이용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/유통/증명한다.

3. 기반시설운영

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부가서비스)

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DB 서비스

회사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 유통정보(상품 정보의 흐름) 등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·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·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2. 통신망 서비스

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 접속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,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업체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전용 회선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.

3. SI/컨설팅 서비스

회사는 전자무역 구축 관련 보유한 기술력과 제품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계/개발/구축 등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4. 기타

제7조(서비스 지역)

회사는 국내 전 지역 및 해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8조(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처리시간)

기본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한다. 또한 서비스에 따른 장애처리도 서비스 제공시간과 동일하게 제공한다.

제2장 약정

제9조(서비스의 이용신청)

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용신청서(이하 '신청서'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신청의 승인)

①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과 설비의 용량, 기술적 여건 및 기타 관련법

제16조(이용자ID 등)

① 회사는 각 사서함 당 하나의 고유번호 인 이용자ID를 부여한다.

②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ID,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의사를 변경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
1.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
2. 기타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

제17조(서비스제공의 중지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국역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, 국역 및 공익보호 차원에서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, 관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

2.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때

3.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으로 선정된 때

③ 회사는 제1,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
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.

제18조(서비스의 일시중지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.

1. 이용자측의 장애 때
2. 이용자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을 때
3. 회사가 정한 정기 점검 때

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.

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서비스제공 일시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

제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재개한다.

제19조(약정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 전에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희망일의 7일 이전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신청한 서비스가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정하여 동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
 2.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 3. 이용자가 회사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3회 이상 서비스제공 중지를 당한 때
 4.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 5.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때
 6. 2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
- ④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의사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

제3장 이용자설비의 설치

제20조(이용자설비의 설치)

- ①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사업장 등 기술상,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.

제21조(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)

- ①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설비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 중 회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이용자 설비의 하자에 대하여

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
- 4.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5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입 또는 수익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- 6.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이용자가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.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제27조(회사의 의무)

-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.
- ④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.

제28조(이용자의 의무)
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.
- ②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이외에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수,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요구로 회사가 장애보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- ⑤ 회사는 이용자설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검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검사 3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검사인은 신분증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/된다.

제22조(전자무역기반시설의 유지보수)

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한다.

제23조(설비검사 등)

- ① 이용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이용자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설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치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

제24조(고장신고)

이용자가 이용자설비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점검한 후 회사에 대하여 고장을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권리와 의무

제25조(양도 등의 금지)

-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권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, 질권설정,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.

-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설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제26조(이용자의 지위승계)
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된다.

1.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때
 2.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
 3.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
- ④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이용자는 가입승인서가 발급되면 사용량 유무에 관계없이 전송료부과의 대상이 된다.

제5장 요금

제29조(서비스 이용요금)

-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한다.
- ② 전자무역문서이용료 또는 전자문서전송료(이하 '전송료')중 송신료는 송신자가, 수신료는 수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약정을 적용한다. 또한 사서함별로 EDI서비스중계서비스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- ③ 전송료 산정은 서비스별 단가에 전송량(또는 건수)을 곱하여 산정하되, 서비스별 사용량(또는 건수)에 따른 구간별 할인 및 특별 추가할인, 심야시간 할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.

-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때 약정서 사본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⑤ 개설비(가입비)는 서비스개시일로부터 부과한다. 단, 개설 후 해지를 하더라도 개설비는 반환되지 않으며, 재개설을 할 경우에는 개설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과 같이 적용한다.

제30조(요금납입방법)

① 이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- ②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로에 의한 방법
2.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
3.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
4. 전자납부에 의한 방법
5.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

- ③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발행한다.

-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한다.

- ⑤ 이용자가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, 신청일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한다.

제31조(요금납입책임자)

